

#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

- 제정 2015. 2. 1.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63호
- 개정 2015. 12. 1.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75호
- 개정 2021. 1. 4.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20호
- 개정 2023. 2. 8.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45호
- 개정 2023. 10. 10.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55호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(창구취급시간)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취급시간)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~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,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.
- ③ 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취급시간 연장)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안내)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563호, 2015. 2. 1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575호, 2015. 12. 1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620호, 2021. 1. 4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645호, 2023. 2. 8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655호, 2023. 10. 10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

총괄국명	우체국명	취급시간	시행일
단 양	가 곡	09:00 ~ 12:00	2015.2.1.~
	어상천	14:00 ~ 18:00	
	단양단성	09:00 ~ 12:00	2023.10.10.~
금 산	부 리	09:00 ~ 12:00	2015.12.1.~
	금산금성	14:00 ~ 18:00	
예 산	대 흥	09:00 ~ 12:00	2015.12.1.~
	예산봉산	14:00 ~ 18:00	
보 령	보령성주	09:00 ~ 12:00	2015.12.1.~
	주 산	14:00 ~ 18:00	
	보령청라(출)	09:00 ~ 12:00	2019.1.14.~
	보령천북(출)	14:00 ~ 18:00	
보 은	보은산외	09:00 ~ 12:00	2015.12.1.~
	마 로	14:00 ~ 18:00	
제 천	제천금성	09:00 ~ 12:00	2018.7.1.~
	청풍	14:00 ~ 18:00	
논 산	계룡남선	09:00 ~ 12:00	2021.1.4.~
	별곡	14:00 ~ 18:00	2018.7.1.~

【별표 2】

1. 창구업무시간 안내문

: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

2. 안내문 사양도

: 우체국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이외 이용가능 우체국 표시(예시)

